

Vol. **45**

2020년 4월
해사정책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 해사법률, 해사정책, 해사안전,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총괄 박한선 실장
- 감수 윤희성 본부장
- 발행인 장영태 원장
- 발행처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TEL. 051-797-4800
- FAX. 051-797-48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기구의 대응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 IMO는 선원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교대 등을 강조함¹⁾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 강화와 입항 거부가 확대됨에 따라 IMO는 회원국의 이해와 긴밀한 협력을 요청함
- 또한 여객 승·하선, 화물 선적·하역 작업, 선박 수리·검사를 위한 조선소 입거, 선용품·보급품 선적, 각종 증서 발급 등에 대해서도 기국, 항만당국,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IMO는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회원국이 필요로 할 경우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²⁾

*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법률위원회(Legal Committee: LEG),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cilitation Committee: FAL)

▶ 한편 IM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로운 입항허기(free pratique)를 보장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 방지 조치를 촉구함³⁾

- 또한 IMO는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CS)가 작성한 선박운항자 대응지침을 공식 배포함⁴⁾
- 국제해운회의소(ICS)와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은 IMO, WHO, 국제노동기구(ILO)⁵⁾ 등에 해상무역의 중요성과 원활한 선원 교체를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함⁶⁾
- ITF는 승선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선원들에 대해 개별 선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1개월간 승선기간 연장에 동의함⁷⁾
- 또한 IMO는 최근에 개최된 G20 화상정상회의(3.26.)의 공동성명문에 포함된 '국제무역 혼란에 대한 대

1) Circular Letter No.4204/Add.1 (19 February 2020)

2) 관련 협약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항만국통제절차(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등

3) Circular Letter No.4204/Add.2 (21 February 2020): Joint Statement IMO-WHO o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4) Circular Letter No.4204/Add.4 (5 March 2020)

5)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7)은 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을 명시함(96개국 비준, 전세계선대의 91%)

6) Joint Open Letter to United Nations agencies from the global maritime transport industry (19 March 2020)

7)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응' 내용을 강조하며, ICS, BIMCO 등이 제안한 '해상무역 원활화 대응 방안 초안'을 공유함⁸⁾

*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 해결, 국제무역 촉진,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 방지 등을 위해 항만접근, 선원 교대, 항만운영, 건강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

〈그림 1〉 IMO의 코로나 대응 관련 사진



자료 :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8-IMO-SG-message.aspx> (검색일: 2020.4.2.)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09-seafarers-COVID19.aspx> (검색일: 2020.4.2.)

■ 항만당국은 선원, 증서 등에 대해 요건 완화^{b)}

- ▶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는 선원의 승선기간⁹⁾,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¹⁰⁾ 등을 3개월 연장하는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선박등록국가가 발행한 면책서한과 향후 대응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계획임
 - 또한 미국선급(American Bureau of Shipping),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도 원격검사, 검사 연기(3개월) 등을 허용하기로 함
 - 우리 정부도 선박검사와 심사를 못 받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고, 항만 사정 등으로 검사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원격 선박검사 및 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인정함¹¹⁾

8) Circular Letter No.4204/Add.6 (27 March 2020)

9) Tokyo-MOU Circular letter 2020-1 (2 March 2020): GUIDANCE FOR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 RELATING TO MLC 2006

10) Tokyo-MOU Circular letter 2020-2 (12 March 2020): GUIDANCE FOR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 RELATING TO RELEVANT IMO CONVENTIONS

11) 해양수산부, 2020. 3. 26.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선박운항 관련 국제적 논의 필요^{c)}

- ▶ **우리정부는 ILO에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함¹²⁾**
 -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ILO 차원의 공식 검토와 논의를 기대함
 - 우리나라 선주협회도 중국 조선소 휴업에 따른 선박정기검사 지연, 선원교대 등에 대해 IMO, ILO 등 국제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 유럽공동체선주협회와 유럽해운근로자협회도 공동으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 서한을 보내 유럽연합의 경제 및 사회에서의 해운과 선원의 기능을 강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함¹³⁾
- ▶ **한편 ILO는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d)}**
 - ILO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선원들의 이동 자유, 선용품 공급 등에 대한 권리 보장 필요성을 강조함¹⁴⁾
 - ILO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와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함
 - 이외에도 승선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실용적인 조치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을 촉구함
- ▶ **코로나19로 인한 선박운항 차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IMO, ILO 등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등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임**
 - 특히 선원의 최대근무기간, 교육훈련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선원의 건강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보건증명서(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과 절차 등에 대한 보완도 요구됨
 - 한편 연속승선 규정을 완화하여 교대 없이 승선근무가 이루어지면 선원피로도가 쌓이고 항해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¹⁵⁾
 -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선원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 ▶ **현재 IMO는 모든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태로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서는 코로나 19의 면밀한 진행 상황 관찰과 대응계획 수립이 요구됨**
 - 우리나라 정부는 IMO, ILO 등 국제기구의 화상·온라인 회의 등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한편 유럽항만기구(European Sea Ports Organization: ESPO)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물류보안분

12) 해양수산부, 2020. 3. 17.

13)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ECSA)/European Transport Workers' Federation(ETF), 2020. 3. 18.

14) Special Tripartite Committee는 해사노동협약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 참여)

15) 일부 글로벌 선사들은 선원교대를 중단하고 교대 없이 승선근무를 진행중임

야의 사전인증(green lane)과 유사한 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함

-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박운항과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절차 및 국제사회의 공동지원 대책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국제해운회의소(ICS)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포스터



자료 : [https://www.ics-shipping.org/news/press-releases/view-article/2020/03/05/international-chamber-of-shipping-\(ics\)-issues-new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shipping-industry](https://www.ics-shipping.org/news/press-releases/view-article/2020/03/05/international-chamber-of-shipping-(ics)-issues-news-coronavirus-(covid-19)-guidance-for-shipping-industry) (검색일: 2020.4.2.)

최영석 부연구위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yschoe@kmi.re.kr / 051-797-4391)

참고 자료

- a) <http://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Coronavirus.aspx> (검색일: 2020.4.2.)
- b) http://www.tokyo-mou.org/publications/press_release.php (검색일: 2020.4.2.)
- c)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31173&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tPageNo=4> (검색일: 2020.4.2.)
- d)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40307/lang-en/index.htm (검색일: 2020.4.2.)